

2017년도 정기총회

2017. 12. 22. (금) 오후 4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 식 순 |||

전체 사회: 박진태 총무이사

- I. 개 회 사
- II. 2017년 주요사업 보고
- III. 2017년 조직개편
- IV. 회계감사보고
- V. 2018년 사업계획
- VI. 기타 안건
- VII. 신입회원 소개
- VIII. 기타 안내사항

II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보고

1. 한국연기예술학회 활동보고

가. 회의 및 총회

1	제 1차 임시 이사회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4시 / 대학로 상명대학교
2	제 2차 임시 이사회 2017년 7월 21일 (금) 오후 4시~ 6시 / 대학로 상명대학교
3	4/4분기 이사회 2017년 11월 25일 (토)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대학로 상명대학교
4	정기총회 2017년 12월 22일 (금) 오후 3시 ~ 6시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

나. 2017 한국연기예술학회 학술사업

1. 학술대회(세미나)

1) 춘계 학술대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유관학회 세미나가 개최됨

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극, 연기, 영화 교육 방법론의 미래 과제	
일 시	2017. 5. 25. (목)	
장 소	삼성블루스퀘어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주 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좌 장	한국연기예술학회 좌장 인사	안재범 (계명대)
발 제1	"배우훈련에 있어 허구적 몸의 의미"	손봉희(세명대)

토 론	이영란(경희대), 신대식(상명대)	
발 제2	"융합형 인재구현과 역할연기의 상관연구"	박진태 (여주대)
토 론	오진호 (상명대), 송갑석(강원대)	

2) 추계 학술대회

▷ YAF(연남골목페스티벌)와 공동 추진하여 진행된 실기중심의 학술대회진행

주 제	연기,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다. - 훈련과 실기를 중심으로	
일 시	2017년 9월 23일 (토)	
장 소	연남동 경암소극장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후 원 및 협력	연남골목아트페스티벌, 프레임이화창조아카데미	
발 제1	중국전통공연예술 경극의 표현양식의 특징 - 배우의 연기예술을 중심으로 -	이광복(청주대)
발 제2	계슈탈트를 활용한 비전공자와의 연기활동	이유경(중앙대)
발 제3	연기! 과연 어려운 것인가?	신대식(상명대)
발 제4	뮤지컬발성의 기본레서피 - 노래를 잘하려면 아무것도 하지마라 -	최성윤(서경대)
발 의	박진태(대진대), 유원용(북경대)	

3) 연구윤리세미나 개최

주 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표절과 중복게재를 중심으로
일 시	2017년 2월 4일(토) 오후 2시
장 소	대학로 상명대
강 사	이인재(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2. 「연기예술연구」 등재후보지(KCI) 선정

1) 업무보고

- (1)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가동함.
- (2) 등재(후보)지 신청 작업 과정에서, 여러 등재(후보)지의 조건 및 양질의 요건구축을 위해 청구교대 김종두 사범대 교수를 등재사업위원으로 추대함.
- (3) 등재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확립함으로써 홈페이지에서 논문투고 가능해짐.
- (4) (사)한국연기예술학회 논문지인 「연기예술연구」가 2017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됨. (2017년 8월 29일 발표)

(5) 학술 사무국 개설

역할	이름	소속
학술사무장	한정수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겸임교수
학술사무차장	전병성	대진대학교
학술사무차장	최민수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박진태 총무이사를 위시로 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학술지 유지관리 및 개발에 집중함.

3. 「연기예술연구」 발간

- 1) 한국연기예술학회 학술지인 「연기예술연구」는 창간호 이래로 2016년까지 연 1회 발간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 발간.
- 2) 「연기예술연구」 9호(6월 30일)는 총 6편의 연기, 연극, 영상, 무용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발간.
- 3) 「연기예술연구」 10호(12월 31일 발간예정)는 문화예술로서의 힐링과 치유 등의 분야까지 확장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학술지에 게재.
- 4) 향후 2018년부터는 지속적인 학술대회(춘·추계) 및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술지 발간을 연 3회(4월 30일/8월 31일/12월 31일)로 진행할 예정.

다. 제 6회 국제연기페스티벌(Global Acting Festival)

1. 축제개요

주최	(사) 한국연기예술학회
후원	청주대 영화학과, 안양대 공연예술학과, (사)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부, 김은영유외과, 사일연액팅스튜디오, ㈜캐스팅나우
축제명	제 6회 국제연기페스티벌(G.A.F, Global Acting Festival)
테 마	살아있는 현장에서의 연기예술(찾아가는 심사)
일 시	2017. 9. 12. ~ 2012. 12. 3.
공연장	각 참가팀의 공연장소
참가팀	연극 7팀 / 영화 6팀 / 무용 1팀

2. 집행부 소개 및 업무보고

1) 제6회 GAF 집행부

역할	이름	소속
조직위원장	오진호	한국연기예술학회 회장, 상명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어일선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집행위원장	정혜승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
집행위원	신대식	상명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겸임교수
집행위원	유원용	경북대학교 뮤지컬과 교수
집행위원	이광복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강사
집행위원	최성운	서경대학교 초빙교수
집행위원	박성준	한국영상대학 영상연출학과 교수
집행위원	신현주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사무국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사무국	

2) 업무보고

- (1) 2017년 1월에 있던 서울문화재단 축제지원 사업과 2월에 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공연예술행사)을 신청했으나 탈락.
- (2) 2차 임시이사회(2017. 7. 21. / 대학로 상명대)
 - ① GAF 준비위원회 조직
 - ② GAF 진행방식 논의
- (3) GAF 준비위원회 1차 회의(2017. 8. 6. / 연남동 경암소극장)
 - ① GAF의 개최 및 유지방식 논의
 - ▷ 하반기 공연되는 작품 중 가프 참가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는 방식이 제기됨
 - ▷ 최소 5편 이상의 연극작품과 영화작품을 모집하기로 함.
 - ② 축제 일정 및 심사방식 논의
 - ③ 조직 내 업무분장 논의
 - ④ 예산안 논의
 - ⑤ 참가팀 모집방식 논의
- (4) GAF준비위원회 2차 회의(2017. 8. 24. / 경암소극장)
 - ① 심사위원 선정 논의
 - ▷ 3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역할	이름	소속
심사위원장	어일선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심사위원	송형중	한국연극협회 회장
심사위원	김수미	한국 극작가 협회 부이사장

▷ 심사위원단이 참가작품의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

② 가프 영화제 진행사항

▷ 10월에 진행되는 충북영화제에 나오는 가족영화에 가프영화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기로 함(10월 15일에 가프 영화상영 종료)

③ 팸플릿 제작

▷ 가프 팸플릿 제작을 청주대학교 영화학과의 도움을 받기로 함.(12월말 나올 예정)

▷ 참가팀의 작품과 가프 영화제 그리고 초청작의 내용을 담기로 함.

④ 시상부문 결정 및 시상식 일정

▷ 가프대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관객상 총 5개 부문 시상기로 함.

▷ 시상식은 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함.

3) 참가팀 모집

(1) 모집공고 : 2017년 8월 20일(일) ~ 9월 3일(일)

(2) 참가작품 및 공연일정

날짜	공연 팀	공연제목	장소
9.12 ~ 9.17	극단 어우름	바다 한가운데서	대학로 청운예술극장
9.14 ~ 9.24	극단 모이공	노트르담 드 파리: 광인들의 축제	대학로 마당세실극장
9.19 ~ 9.24	극단 동백	안톤체홉: 일상의 단편	대학로 청운예술극장
10.2	극단 미로	불카누스	대학로 노을소극장
10.17 ~ 10.22	어소사이어티	요정의 노래	대학로 청운예술극장
11.17 ~ 12.30	극단 엄청난 녀석들	메드베지	연남동 경암소극장
11.30 ~ 12.3	창작스튜디오 2순간	<맥베스>	대학로 '민아트홀'

(3) 가프 영화제 초청작

장편 1편과 5개의 단편으로 총 6편의 영화과가 초청됨.

장르	영화제목	감독(국가)	길이
드라마	어떤하루	정가영, 전선호, 최진혁(한국)	92분
코미디	까꿍	박영찬(한국)	13분
로맨스	진심으로 말하다	양창푸(중국)	11분
드라마	Misadventure	계정은(한국)	7분
로맨스	연	퇴진각(중국)	10분
드라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	염리(중국)	15분

(4) 가프초청작으로 조기숙뉴발레단의 발레작품<감각, 체화 그리고 넘나들>이 초청
▷ 11월 17일/ 오후 8시, 무용전용극장인 'M극장(개포동)'에서 공연

작품명	안무	길이
경계에서 춤추다	김미례	10분
감感 感覺	천소경	10분
울림	홍세희	17분
Develope	조기숙	30분

4) 2017년 제6회 GAF 연극 시상내역

수상부문	극단	공연제목	수상자
가프대상	극단 모이공	노트르담 드 파리: 광인들의 축제	대표 송갑석
연출상	극단 어우름	바다 한가운데서	연출 박상하
남우주연상	극단 엄청난 녀석들	메드베지	배우 유인선
여우주연상	어소사이어티	요정의 노래	배우 이정현
관객상	극단 어우름	바다 한가운데서	대표 정혜승

라. 제 2회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YAF) 보고

1. 축제개요

주최·주관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서울산업진흥원, 프레임(PRAME) 이화창조아카데미 사업단, 이화여자대학교 공연문화연구센터
후원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야기숲 교회, 연남동 주민센터, 명지대학교 융합대학, 이야기숲 교회
협력	스파크 프로덕션, 테디웍스, KTSM
축제명	2017년 제2회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YAF)
테마	‘연남 골목골목, 예술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다’
내용	연극, 영화, 무용, 마임, 음악, 전시, 주민참여형 워크숍 및 학술심포지움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 23일(토) / 13시 ~ 22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대 (연남동 골목일대,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경암소극장 등)
기획목적	- 예술가와 주민이 ‘골목’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함께 예술을 실천함으로써 생태예술(Eco-Arts)을 실현 -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연남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이 연남동 골목골목에서 다발적으로 실행하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2. 집행부 소개 및 업무보고

1) 제2회 YAF 집행부

▷ 2017년 6월, 제2회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YAF) 사업수행조직이 조직되었음.

역할	이름	소속
조직위원장	오진호	한국연기예술학회 회장, 상명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교수
실행위원장	조기숙	프레임 이화창조아카데미 사업단장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자문단	조경만 조성용 인향봉 권재현 최해리	목포대학교 교수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춤문화자료원 대표

총예술감독	한혜주	이화여대 공연문화연구센터 연구교수
영화 예술감독	어일선	한국연기예술학회 수석부회장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연극 예술감독	강양은	청운대학교 교수
마임 예술감독	김종학	대진대학교 교수
공연 예술감독	홍세희	상명대학교 강사
기술 감독	성준혁	스파크 프로덕션 대표
기획팀	박윤세 김동민 김민지 이지원	프레임 이화창조아카데미 연구원 축제전담인턴 축제전담인턴 축제전담인턴
운영 실무팀	최민수(영화) 박해리(공연예술) 심보라(전시)	청주대학교 석사과정 청주대학교 석사과정 프레임 이화창조아카데미 연구원
지원	프레임 이화창조아카데미 연구원 및 수료생 등	

2). 주요업무

(1) 조직위원 및 실행위원 :

- ▷ 거리퍼포먼스를 위한 주요거점인 경의선 숲길과 연남동 골목일대의 사용 시민지자체의 허가
-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외 연남동 주민들을 설득하여 예술가와 함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

(2) 기획팀 및 총예술감독:

-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YAF아카데미>, <김소월 시화전> 공모 등 시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장소섭외 및 이벤트 기점을 만들기 위해 골목 상인들을 설득하며 협조 요청
- ▷ 자원봉사자와 스태프 구성 및 교육
- ▷ 축제 프로그램 제작 진행(주민, 예술감독, 예술가, 제작감독과의 만남 조율 및 프로그래밍)
- ▷ 홍보: 포스터, 리플릿, 웹전단 디자인 제작 및 배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
- ▷ 공식MD 디자인제작(스티커, 핀버튼 6종, 에코백, 에코파우치, 티셔츠 등)

▷ 축제 전반의 기획 및 축제 만족도조사 실시(축제평가 자료집 편집 진행 중)

3) 축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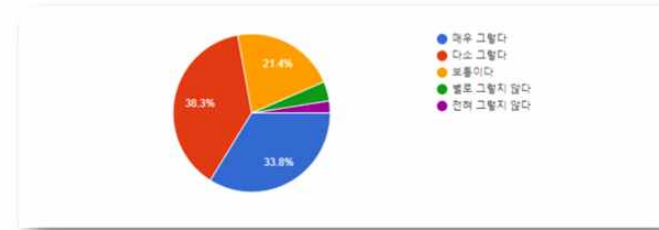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소	비고
개막식	추경퍼포먼스	각 골목 '마왕, 총, 뮤지컬' 플래시몹	각 골목 및 경의선 숲길공원	
	개막행사	Making film 촬영 + 인사말, 축하 등 아카데미 과정 포함 축제 준비단계부터의 다큐멘터리 영상		
	축하공연	뮤지컬공연 (트리오) 아름다운 나라 : 연남동 주민합창단 별리 판디자 : 연남 주민합창단과 함께하는 노래, 춤, 합동 공연	경의선 숲길공원 (파출소 근처)	연남 주민합창단 조기속NEW발레단
	퍼레이드	골목 안내와 골목 중간중간 작품 (마왕, 연기공연, 춤+시화전)		
폐막식	폐막 퍼포먼스	갈 the way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소마 휴댄서스
	폐막식 스포츠공연	Hotspot		핫스팟
버스킹	길거리 퍼포먼스	사이렌의 유혹	경의선 숲길공원 & 연남동 골목 일대 (유동적 운영)	채임버 앙상블 하늬바람
		기타리스트와 발레리나		핫스팟, 조기속NEW발레단
		플래시몹		퍼포먼스그룹 '큐빅'
	연극	음담하라(7080 (가야금 3중주))		AWESOME 가야
		'출근길'	연기골목, 공방골목	창작집단 '하디 캄파니'
		눈으로 보는 라디오 '하이쿠 - 9월의 어느 저녁'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정혜송, 임옥란, 강양은
		'나는 배우다' 연남동 주민을 위한 계절과 연기 워크숍	이야기술포럼, 경의선 숲길공원	손은우, 강양은 + 연남동 주민
	무용(춤)	거리에서 너와 내가 만나다	경의선 숲길공원, 연기골목 내	강양은
		춤추는 시 I, 춤추는 시 II, Free Dance	총골목	조기속NEW발레단
		마왕쇼 1 : 지글링과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마왕	연기골목 내	극단 이미지헌터빌리지
마왕	마왕쇼 2 <어릿광대>	경의선 숲길공원	홍정중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소	비고
버스킹	유지컬	유지컬 넘버 버스킹 10곡 이상	음악골목 내 (임대건물, 아와골목)	총청유지컬컴퍼니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박해리
음악	시내마인 유적 (목관 5중주 연주)	조지수 트리오	이야기술포럼, 음악골목 내	채임버 앙상블 하늬바람
				조지수, 이동영, 윤길비
영화제	영상영화제	영화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옥상	
	뉴미디어영화제	축제 making film + Y.A.F. 1기 아카데미 결과물 + 연남동 관련 영상	은행나무 놀이터	TPP,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연남 시내마	연남동 관련 단편 영화	이야기술포럼	
	음악을 보다	음악 영화 상영	음악골목 내 (임대건물) (배정)	최민수
전시	김소월 시화전	8주간 아카데미 진행 후 결과물 & 공모전 작품 전시	연남동빛꽃길	인행복 작가, 심보라 작가
		공모전 시상식, 시 낭독회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학술대회	학술대회	학술스포지움과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경양소극장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연남동 골목아카데미 피어남 플랫폼	소매틱 공연	8주간 아카데미 진행 후 만들어낸 작품 발표		조기속NEW발레단 쇼어람 어린이
	미술작품 전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 그림 전시	희망디자이너스센터 내	쇼어람 어린이
	영상 상영	작품 making film		

4)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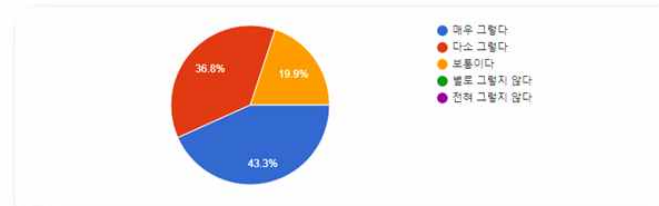
축제현장에서의 오프라인 설문과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참여관객들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었음. 설문의 질문은 총 7개였으며 5개의 객관식 질문과 3개의 주관식 질문을 만들어 조사하였음.

①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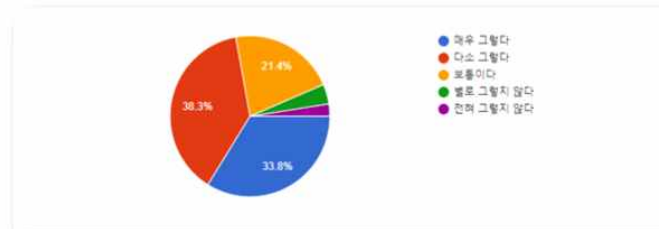
→ 설문에 응한 관객의 70.6%의 관객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총 96.5%의 관객이 2017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주제의 적합성



→ 관객의 80.1%의 관객이 주제에 맞게 페스티벌이 이루어졌다고 답했으며, 설문에 응한 모든 관객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임으로써, <2017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이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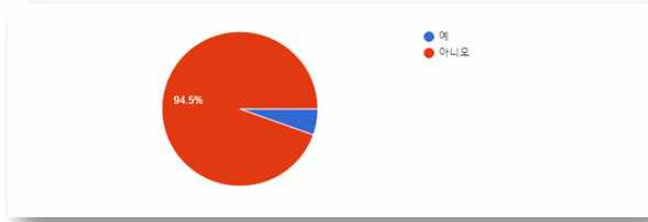
③ 이후 축제에 참여 의사



관객 중 33.8%의 관객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참가 의지를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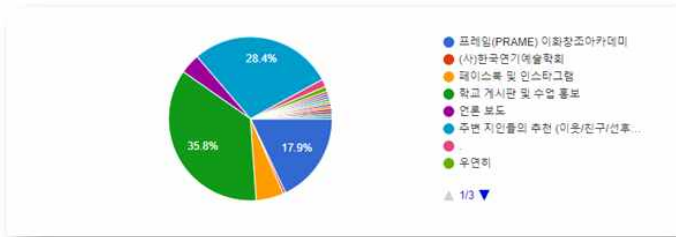
④ 지난 야프에 참여한 경험

다. KOSAS 예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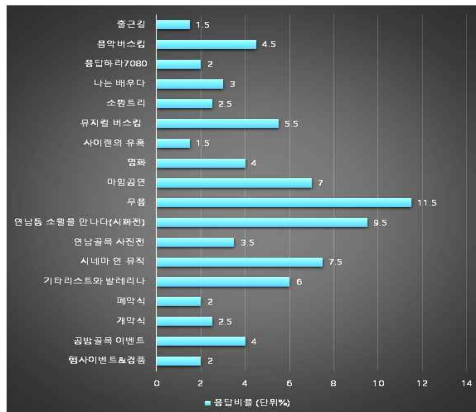
질문에 응한 관객의 94.5%가 <2017 연남골목 아트페스티벌>에 처음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⑤ 참여 루트



설문에 응한 관객의 38.3%는 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28.4%의 관객들은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⑥ 선호 프로그램



설문에 응한 관객은 무용(11.5%), 시화전(9.5%), 시네마 인 뮤직(7.5%)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개막과 폐막 역시 각각 2.5%와 2%로 큰 선호도를 보임.

(학회로고)

KOSAS예술상 공로패

연극배우 윤문식

“배우의 꿈을 위해 가솔까지 감행했던, 천상배우이며 마당놀이꾼, 진정한 예술인”

귀하는 대한민국 연극배우로서 56여년을 활동하는 동안 한국의 공연예술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공연양식이며 연기술이라 할 수 있는 ‘마당놀이’의 개혁과 발전에 정진해 주심에, 많은 예능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셨으며 연극계의 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공연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지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회원들 모두의 마음을 KOSAS예술상 패에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사) 한국연기예술학회

회장 : 오 진 호 【고 문】 : 우상전 【감 사】 : 조영진, 서충식
 법률자문 : 이 혁 변호사, 정한중 변호사
 수석부회장 : 어일선(청주대)
 부회장 : 허윤정(안양대), 김은경(중앙대)
 총무이사 : 박진태(상임), 엄우란(연극원), 신대식(상명대)
 학술이사 : 최종한(상임), 장혜원(안동대), 신현주(중원대), 오광석(여주대)
 교육정책이사 : 강양은(상임), 남명지(경성대), 박호영(서원대), 하순주
 국제교류이사 : 이광복(상임), 고현욱(청주대), 김진욱(평택대), 이정하(세명대)
 산학협력이사 : 정혜승(상임), 이영란(경희대), 김서라, 김종학(대진대), 구태환(인천대)
 대외홍보이사 : 콧미정(상임), 박재용, 김석범(수원대), 변우민, 임 호(백석대)

1) 전문위원회

영화, 영상위원 : 신현수(상임), 김경규(호원대), 김진영, 박성준(영상대),
 백민제(중부대)

연극위원 : 이기호(상임), 안재범(계명대), 안창경(강원대), 이유경(중앙대),
 송갑석(강원대)

음악, 뮤지컬위원 : 유원용(상임), 김소희(가천대), 최성윤(서경대),
 손인오(안양대), 김미정(중부대)

무용, 퍼포먼스위원 : 조기숙(상임), 한혜주(이화여대), 홍세희(청주대),
 정이와(한양여대)

2) 특화분과

- 용,복합 영화영상 -스포테인먼트
- 문화예술 -미디어 문화기술
- 에듀테인먼트

3) 사 무 국

사무국장 : 홍세희(청주대)
 학술사무국장 : 한정수(중원대)
 사무차장 : 성건제, 전병성
 사무간사 : 강해련, 권일, 박해리, 최민수

■ 수입 현황 (2017. 01. 01 ~ 2017. 12. 15. 까지의 통장거래내역기준)

항목	과목	금액	비고
회비	개인회원(기존)	₩120,000	3명*40,000원
	개인회원(신입/재가입)	₩960,000	16명*60,000원
	개인회원(평생)	₩2,800,000	1명*600,000원 4명*400,000원 1명*300,000원 1명*200,000원 1명*100,000원
	소계	₩3,880,000	
제6회 국제연기 페스티벌(가프)	가프참가비	₩700,000	참가팀(7팀*100,000원)
	보조금	₩202,140	학회
	소계	₩902,140	
학술지	논문게재비	₩1,150,000	2인*200,000원 5인*150,000원
	심사비	₩480,000	8인*60,000원
	소계	₩1,630,000	
기타수입	연남골목아트페스티벌 (아프)	₩350,000	진행비
	후원금	₩910,000	
	결산이자	₩2,257	
	소계	₩1,262,257	
수입합계		₩7,674,397	
전년도 이월금		₩6,208,635	
수입 총계		₩13,883,032	

■ 지출 현황

항목	과목	금액	비고
사업비	제2회 연남골목아트페스티벌 (야프)	₩174,300	*학술대회 운영비
	제6회 국제연기페스티벌 (가프)	₩908,500	*팸플릿디자인 *심사비용 *가프살판제작
	학술사업	₩2,380,000	*등재 사업, 논문심사, 학술지 제작 등
	KOSAS예술상	₩235,000	*상패제작
	소계	₩3,697,800	
운영비	정기총회 및 이사회회	₩664,700	*물품준비 *다과 및 회식 *출회준비
	학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2,944,730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업데이트
	학술국 운영비	₩607,070	*윤리세미나강사비 *윤리세미나현수막 등의 소품구비 기타 질기 구입비
	사무국운영-경조사비	₩339,400	*화환, 조화발송
	사무국운영-잡비	₩75,020	*물품구매, 회의비용 우편발송, 기자재구입 등
		소계	₩4,630,920
기타지출	각종 수수료	₩22,060	*sms수수료, 이체수수료 및 기타
	소계	₩22,060	
지출합계		₩8,350,780	
전년도 이월금		₩0	
지출총계		₩8,350,780	

■ 수입(13,883,032원) - 지출(8,350,780원) = 총액 5,532,252원
[2017년 12월 15일 시점 기준]

V

2018년 사업계획

1	[연기예술연구] 학술지 등재 사업
2	제 7회 국제연기페스티벌
3	제 3회 연남골목아트페스티벌
4	춘계 학술대회, 추계 학술대회 및 연기 워크숍
5	KOSAS 예술상

VI

기타안건

VII

신입회원 소개

개인회원

박보람, 소해진, 이신영, 문경아, 정대용, 장민용, 김술, 강초룡, 김종국, 천창훈, 김민서, 홍세은, 이수연

평생회원

백민제, 서상규, 손인오, 송갑석, 정이와, 조정희, 조혜현, 진승현, 홍성택

■ Kosas 정회원 현황

[* 2009년 5월 창단 ~ 2017. 12월 현재까지 서류/온라인상 등록자 기준]

개인 : 총 196명

VIII 기타 안내

VIII 사단법인 한국연기학회 사무국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사무국 >

홍 세 희 사무국장 - 총괄 (재정관리)

E-Mail. kotafa@naver.com

한 정 수 학술국장 - 학술사업

E-Mail. ddongzing@naver.com

성 건 제 사무차장 - 학술사업 및 행사

E-Mail. ggunjei@gmail.com

전 병 성 사무차장 - 학술사업 및 행사

E-Mail. forestsehee@gmail.com

권 일 간 사 - 행 정 (학회관련행사)

E-Mail. adinabro@naver.com

강 해 련 간 사 -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관리

E-Mail. musepierian@gmail.com

박 해 리 간 사 - 축제사업

E-Mail. hothr01@naver.com

최 민 수 간 사 - 학술사업

E-Mail. aramas9815@naver.com

X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정관

[2009년 학회설립-문광부 제출 최초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Korea Society of Acting Studies(KOSAS)'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연기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연기예술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기예술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
2. 연기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
3. 연기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지원
4. 국내의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 전문대학 이상 연기관련학과 또는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5년 이상 연기 관련 또는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 이사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
2. 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2011.7.6. 이사회 회의 시 인준 - 2011.12.17 정기총회 가인준/ 문광부 개정안 제출 미작업]

제 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개인회원 : 공연 및 영상관련 학과에서 연기관련 실기교육을 2학기(1년) 이상 강의한 자와 공연 및 영상분야에서 연기관련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기타 이사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인준한 자
2. 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3.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저명)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 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 할 수 있다.

③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학술연구 활동 및 발표
5. 기타 학회행사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③ 회원 자격상실은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3. 감사 2인

[2011.7.6. 이사회 회의 시 인준 - 2011.12.17 정기총회 가인준/ 문광부 개정안 제출 미작업]

-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1.7.6. 이사회 회의 시 인준 - 2011.12.17 정기총회 가인준/ 문광부 개정안 제출 미작업]

- 제 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단, 회장단(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의 경우는 이사회를 통한 추대 및 의결을 득한 후, 임시 또는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2011.7.6. 이사회 회의 시 인준 - 2011.12.17 정기총회 가인준/ 문광부 개정안 제출 미작업]

제 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부터 편집위원회 의장을 겸직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 당해 연도 말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익년부터 정식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하 생략....]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임시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임시회장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1.7.6. 이사회 회의 시 인준 - 2011.12.17 정기총회 가인준/ 문광부 개정안 제출 미작업]

제 18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부회장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결정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급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령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 ③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33조(책임과 기능) ①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
3. 윤리위원회는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 담당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